

대한펜싱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2024.1.6

(사) 대한펜싱협회

# 대한펜싱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발규정은 (사)대한펜싱협회(이하 협회)가 관장하는 국가대표의 지도자 및 선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펜싱 발전과 국위를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0. 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 2호에 의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또는 대한펜싱협회(이하 “본 협회”이라 한다)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이하 “강화훈련”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란 국가대표 훈련기간 동안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하며, 국가대표선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0. 12>

④ 국가대표란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를 말한다.

⑤ 삭제<2022. 10. 12>

⑥ 삭제<2022. 10. 12>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각 종목별 펜싱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법령 및 기타, 다른 상위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② 이 선발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2>

1. 대한체육회가 파견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등의 종합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2.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3.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4. FIE 그랑프리 및 월드컵 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5. 국가대표 자격으로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①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고, 본 협회 회장의 재가 후 추천에 의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2. 10. 12>

② 삭제<2022. 10. 12>

제5조(결격사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0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총감독, 감독, 코치, 선수등),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0.12>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 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펜싱경기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계획 수립 및 그 시행과 지휘,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3. 스포츠과학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우수자질 보유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7. 강화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8. 각종 국제대회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9. 강화훈련참가 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특히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는 본 협회 및 대표팀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외국인 코치초청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인, 지도자 1인, 팀 관계자 1인, 시도경기단체임원 1인, 비경기인 1인,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⑦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⑧ 현 위원이 지도자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위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시 준수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회장과 친족인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펜싱 종목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장 지도자

제11조(선발기준)

- ①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
  - 지도자 경력
  - 리더십 및 선수포용능력
  - 지도자로서 자질 및 철학과 가치관
  - 대회성적(국내/국제)
  - 펜싱에 대한 열정
  - 대표 팀 운영능력
  - 투철한 국가관
- ②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1. 펜싱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펜싱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펜싱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펜싱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펜싱 지도경력 있는 사람
- ④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펜싱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펜싱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펜싱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펜싱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펜싱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펜싱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펜싱 지도경력 있는 사람
- ⑤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2>

제12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① 본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본 협회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심의, 의결하고 본 협회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본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종료 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은 재임용과 공개선발을 혼용하고 올림픽 종료 후 선발 방법은 전원 공개 모집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개선발 시 지원자가 1명일 경우 7일 이내 재공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④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회장이 체육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12>
- ⑤ 국가대표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2>
- ⑥ 삭제<2022. 10. 12>

- ⑦ 삭제<2022. 10. 12>
- ⑧ 삭제<2022. 10. 12>

제13조(임기 및 역할)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종료하는 월에 말일로 한다는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해당 지도자가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14조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를 태만 하는 경우 최소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삭제<2022. 10. 12>

제14조(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

1.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계획 및 지도와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경기력 부진선수 및 훈련기피, 태만시 교체,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개인별 외국 선수와의 비교 분석 결과 보고와 병행하여 단체전 경기결과에 따른 선수별 비교 분석 보고)
  7.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자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9.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10. 기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 ② 국가대표 지도자는 상기 제1항 제 2호의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서를 월별, 분기별로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6호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및 분석결과 보고서는 매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 제4장 선 수

제15조(훈련 참가선수의 선발) ①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협회의 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고, 본 협회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추천에 의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 ② 제1항 외의 국가대표선수는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고, 위원회의 추천 후 본 협회 회장의 재가를 받은 후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협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제16조(국가대표선수 선발) ① 국가대표선수는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본 협회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펜싱연맹(FIE)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 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국내대회 및 국가대표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강화훈련 참가선수의 선발기준) ① 해당 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의 선발기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 선발을 통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 시 선발방식에 따른 순위(선발일 기준) 기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차기 국가대표 선수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을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25세 이하로 구성된 본 협회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순위에 의해 교체 선발한다. <개정 2022.10.12>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를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할 경우 해당 선수의 원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대표 선수로 강화훈련 등에 소집되어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평가전을 실시하여 평가전 결과(성적)에 따라 국가대표선수 일부 및 전체를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 제5장 국가대표선수 선발

제18조(선발시기) 당해 연도 국가대표 선발은 8월 중에 시행한다. 단, 당해 연도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이 종료된 후에 선발하며, 세계펜싱선수권대회가 8월 이후에 실시될 경우는 예외로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종료 후 선발한다.

제19조(선발자격)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당해 연도 본 협회 등록선수로서 13세 이상인자 <개정 2024.1.6>

제20조(국가대표 선발 방식) ① 선발 방식은 대통령배, 김창환배, 종목별오픈대회, 국가대표 선발 대회를 종목별로 실시한 총 4개 국내대회 개인전 성적에 따른 점수와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순위에 따른 점수 합산에 의한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개정 2022.10.12>

② 점수부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한다.

1. 4개의 국내대회 점수는 국제펜싱연맹(FIE) 점수 부여 방식에 따르며, 점수 배점은 월드컵 점수로 한다. 단, 예선별을 통과한 엘리미나시옹 디렉트에 진출한 선수에 한해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2.10.12>

1위	32점
2위	26점
3위	20점
5~8위	14점
9~16위	8점
17~32위	4점
33~64위	2점
65~96위	1점
97~128위	0.5점

2.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참가로 인하여 제20조 제1항의 국내대회 불참 시 국제 대회에 참가한 모든 국가대표선수는 엘리미나시옹 진출 성적에 따라 1위 36점, 2위 32점, 3위 28점, 5-8위 24점, 9-16위 20점, 17-32위 14점, 33-64위 8점, 65-128위 4점, 129-256위 3점을 부여하고 이외 및 예선탈락 자는 2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2.10.12>

3.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순위에 따른 점수는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순위가 1~16위 이내인 자에게는 1위 32점, 2위 31점, 3위 30점 등 16위(17점)까지 1점씩 차감하여 순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합산 점수가 같은(동점) 경우 순위결정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배, 김창환배, 종목별오픈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중 순위 1위 그리고 나서 2위 등에 오른 상위 성적이 많은 순으로 선발 우선순위를 정한다. (단, 모든 점수와 순위가 같을 경우 순위 결정은 대통령배, 김창환배, 종목별오픈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의 성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2.10.12.>

## 제6장 국가대표선수 구성

제21조(국가대표 선수 구성) ① 국가대표선수는 종목별 16명으로 하되, 선수촌에 입촌한 8명의 선수는 대한체육회 공인 국가대표, 나머지 8명은 본 협회 국가대표로 국가대표 후보선수(25세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개정 2022.10.12., 2024.1.6>

1. 국가대표선수는 선발방식 순위에 의거 8명을 선발한다.

2. 본 협회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 후보선수 (25세이하)) 8명은 최근 3년간 세계 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의 개인전 입상자 중 상위 순위로 4명을 우선 선발한다. 그러나 순위가 동률 때에는 최근 입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국가대표선발 방식 순위에 의거 25세 이하 선수 중 상위 순위로 선수를 선발한다.



다. 국가대표 후보선수(25세이하) 8명에 대한 랭킹 순위는 국가대표선발 방식 순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2.10.12.>

3. 23세 이하 선수가 선수촌에 입촌하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8명으로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선수 자격만 가진다. <개정 2022.10.12.>

② 제1항 외에 대한체육회 입촌하는 공인 국가대표선수 인원이 증원 될 경우, 증원된 인원은 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또는 최근 2년간 월드컵, 그랑프리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코치가 복수 추천(단, 복수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단수 추천 가능)하고 만약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 현재 입촌한 대표 선수를 제외한 별도의 평가전을 실시하여 선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회장의 재가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선수로 확정한다. <신설 2024.1.6>

③ 제2항은 파리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으로 한시적으로 제22조 규정에 따라 올림픽 파견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6>

## 제7장 국가대표선수 운영

제22조(국가대표선수 운영) ①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선수는 제21조 체육회 선수촌에 입촌한 체육회 공인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2.10.12., 2024.1.6>

1. 올림픽의 경우 파견 선수는 국제펜싱연맹(FIE) 올림픽 출전권 획득 결정 발표일기준(한국시간) 국제펜싱연맹(FIE)개인전 랭킹 7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와 해당 지도자의 평가점수 3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합산하는 점수는 [별표1]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파견 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를 적용한 합산점수 상위 순위로 4명을 선발한다. 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자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4.1.6>

2. 아시안게임의 경우 파견 선수는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기명제출 날짜 10일전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7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와 해당 지도자의 평가점수 3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합산하는 점수는 [별표1]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아시안게임 파견 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를 적용한 합산점수 상위 순위로 4명을 선발하고 개인전 참가 선수는 상위 순위로 2명을 선발한다. 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자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4.1.6>

3. 세계선수권대회 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의 선발은 파견대회 공문에 의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의거 선발 한다.  
<개정 2022.10.12. 2024.1.6>

가. 1순위 : 대회개최 공문 ID카드 신청 마감일 10일 前에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7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와 해당 지도자의 평가점수 3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합산하는 점수는 [별표1]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를 적용한 합산점수 상위 순위로 4명을 선발한다. 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자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4.1.6>

나. 2순위 : 기명 엔트리 마감일 10일 前에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7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와 해당 지도자의 평가점수 3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합산하는 점수는 [별표1]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를 적용한 합산점수 상위 순위로 4명을 선발한다. 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자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10카드 신청 마감일이 없을 경우 적용 됨)<개정 2024.1.6>

다. 3순위 : 국제펜싱연맹(FIE) 웹 사이트 엔트리등록 마감일 10일 前에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 7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와 해당 지도자의 평가점수 30% 비율에 적용되는 배점 점수를 합산한다. 이에 합산하는 점수는 [별표1]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를 적용한 합산점수 상위 순위로 4명을 선발한다. 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자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명 엔트리 제출 마감 시기가 없을 경우 적용 됨) <개정 2024.1.6>

② 본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선수가 입촌 후 훈련 기피 및 태만 시 해당종목 대표팀 코치는 총감독과 협의에 의거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정 후 해당 선수는 훈련을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병원진단을 받은 선수는 선수촌에서 퇴촌해야한다.

그리고 30일 이상의 부상으로 퇴촌한 선수가 재 입촌 할 경우 해당 종목 대표팀 코치는 총 감독과 협의 후 요청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요청시에는 가능하며, 치료 진료기간이 종료한 후에 본 협회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진천선수촌 의학센터)의사의 소견서 및 해당 종목 대표 팀 코치의 재 입촌 요청서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2.10.12>

③ 부상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선수가 교체로 퇴촌할 경우 본 협회 국가대표인 국가대표 후보선수(25세 이하)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시 상위 순위 선수가 교체 선수로 입촌한다. 그러나 부상으로 퇴촌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 요청을 할 경우에 참가여부는 협회 지정병원(진천선수촌 의학센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참가여부를 경기력향상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2.10.12>

④ 고의적인 훈련 기피나 태만이 없을 지라도 외상이나 부상에 의한 잦은 훈련 불참, 훈련 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훈련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종목 코치는 총감독과 협의하여 해당 선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증빙 자료를 경기력향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⑤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는 선발된 순간부터 본 협회 및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 자신이나 협회 대내외적 이미지를 저해하는 등

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선수들은 훈련, 시합 중 흡연, 음주 등 국가대표선수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적발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⑥ 대표선수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는 박탈기간 동안 선수촌 입촌 불가와 함께 국제펜싱연맹(FIE)이 인정한 공식대회 및 모든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제재가 없을 경우 국내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⑦ 4항에서 6항에 의해 해당 대표 팀 코치가 선수를 교체 요청할 경우 선수 교체 요청서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증빙자료를 본 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의결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대표팀 지도자는 입촌 일로부터 대표선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 자신의 최대역량을 발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훈련, 시합 기간 동안 금전거래, 금전갈취, 횡령, 배임 등 선수촌 내 음주, 도박, 폭력, 성폭력 등 선수지도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도자는 공식훈련시간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항상 임장 지도해야 하며 본 협회의 명예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2>

⑨ 올림픽 개인전 참가를 위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선발전 참가선수는 국제펜싱연맹(FIE) 랭킹 순으로 결정한다.

⑩ 평가전 실시는 강화훈련 중에 해당 종목의 코치와 총감독의 협의 후 요청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전 결과에 따라 국가대표선수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 할 수 있다. 평가전 대상자, 경기방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2>

1. 국가대표선수로 강화훈련에 참가중인 종목별 8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해당 종목 코치와 총 감독 협의 후 평가전 요청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평가전 요청시 국제펜싱연맹(FIE) 랭킹 32위까지는 평가전에 참가하지 않고 국제펜싱연맹(FIE) 랭킹 33위부터는 평가전에 참가한다.

이밖에 평가전 참가 대상자는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선수 중 국가대표 선수 선발일 기준 국가대표 선발시 적용 하였던 랭킹 9위~16위 선수, 국제펜싱연맹(FIE)랭킹 32위 이내인자, 국가대표후보선수(25세이하 선수)포함 8명, 23세 이하 대표선수 포함 8명 그리고 청소년 국가대표선수 포함 상위 8명 등이며 그러나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하였던 체육회 승인 국가대표선수 8명은 차기 대표선수가 선발되기 전까지 실시하는 국가대표 평가전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평가전 참가자가 32명이 안 될 때에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시, 25세 이하 국가대표후보 선수 포함 8명 이외에 25세 이하 선수 중에서 상위 순위로 선수 32명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참가시킨다. <개정 2024.1.6>

2. 평가전 기간을 7일 이내 기간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2차례의 성적을 합산하여 결과(순위)에 의거 국가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교체한다.

3. 평가전 경기방식은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뿔(Pool) 리그에 참가하여 국제펜싱연맹(FIE) 경기 방식을 적용하지만, 뿔(Pool) 리그 후 탈락자 없이 전원 토너먼트로 순

위를 결정한다. 또한 풀(Pool) 구성시 1순위는 국제펜싱연맹(FIE) 랭킹 32위 이내 순위, 그 다음 국가대표 선발시 종합 랭킹 순위에 의거 풀(Pool) 구성을 한다.

⑪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이 국제펜싱연맹(FIE)으로 확정 발표 후 대표팀 운영은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선수 8명 중 올림픽 참가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교체는 해당 종목 코치와 총 감독이 협의 후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요청하고 본 협회 국가대표인 국가대표 후보선수(25세이하) 등 각급 대표선수 중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 승인(서면결의 포함)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제23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 제8장 보 칙

제24조(국가대표 선발 검증 강화) ① 강화훈련 참가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 명단은 확정 즉시 선발사유를 적시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명단 공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하고, 이의신청 내용은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불공정 행위)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2>

제26조(국가대표선발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제·개정된 규정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본 협회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자료보관)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는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및 대한펜싱협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0.12>

제29조(대표선수기간) 이사회 승인 날부터 다음 년도 국가대표 선발하는 월 말까지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종료된 월 말까지로 하며, 세계펜싱선수권대회가 8월 이후에 실시될 경우는 예외로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종료 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9장 2020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2020 도쿄 올림픽 파견선수 선발 삭제<2022.10.12>

제30조(2020년 국가대표선수 구성 및 선발방법 등) 삭제<2022.10.12>

제31조(2020 도쿄 올림픽 파견선수 선발 방법) 삭제<2022.10.12>

제32조(규정 적용) 삭제<2022.10.12>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는 날(2011.7.2)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는 날(2012.9.13)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는 날(2013.8.29)로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는 날(2014.3.6)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선발절차)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201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12.9 이사회 서면결의)

#### 부 칙 (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년 국가대표 선발은 제20조 제1호의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점수가 주어지는 국내대회가 모두 종료된 후 선발한다. 다만, 2016년 김창환배대회의 점수는 2017년 8월 이전 동 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국가대표 선발시 중복 적용한다.

부 칙 (2017. 0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12.3 이사회 서면결의)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강화훈련 참가선수의 선발기준), 제21조(국가대표선수 구성), 제22조(국가대표선수 운영)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 제17조, 제21조, 제22조는 2019년도 8월 이후 국가대표선수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0조(2020년 국가대표선수 구성 및 선발방법 등), 제31조(2020 도쿄 올림픽 파견선수 선발 방법), 제32조(규정적용)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며, 도쿄 올림픽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 부 칙 (2021. 0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대표선수(만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8조(선발시기) 및 제20조(국가대표 선발 방식), 제21조(국가대표선수 구성)제2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인 제25회 김창환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적용할 수가 없어 점수 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제20조 제1항에 김창환배대회의 점수를 제외하고 만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을 선발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3개(종목별오픈대회, 대통령배대회, 국가대표선발전)대회 개인전 성적의 합산 점수 순위와 국제펜싱연맹 개인전 순위에 따른 점수 합산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②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21조(국가대표선수 구성)에 의거 본 협회 국가대표선수(만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 8명은 부칙 제2조(국가대표선수(만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에 대한 경과조치) ①항에 의거 진천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8명을 제외하고 만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을 선발한다.

③ 위와 같은 사항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로 인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김창환배대회를 치루지 못함으로써 2020년 제8차 전체이사회에서 대회 취소 결정하여 2020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단 코로나 바이러스 19사태가 장기화 되면 추후 경향위원회 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4. 1. 6.>

입촌한 공인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 평가 점수표

구분	비율	배점	평가 항목 및 기준	비고
국제펜싱연맹 (F.I.E) 개인전 랭킹(순위)	70%	70점	국제펜싱연맹(FIE) 개인전 랭킹(순위) 점수 . 1위-8위 70점 . 9위-16위 60점 . 17위-32위 50점 . 33위-64위 40점 . 65위-128위 30점 . 129위 이하 20점	
지도자 평가점수	30%	30점	1. 훈련성실도 . 훈련참여, 훈련수행, 훈련시간 준수, 평가 등 2. 훈련 태도 . 훈련에 임하는 자세, 지도자 지시 이행 등 3. 팀 기여도 . 경기력향상, 팀 워크, 단체전 성적 등	
계	100%	100점		